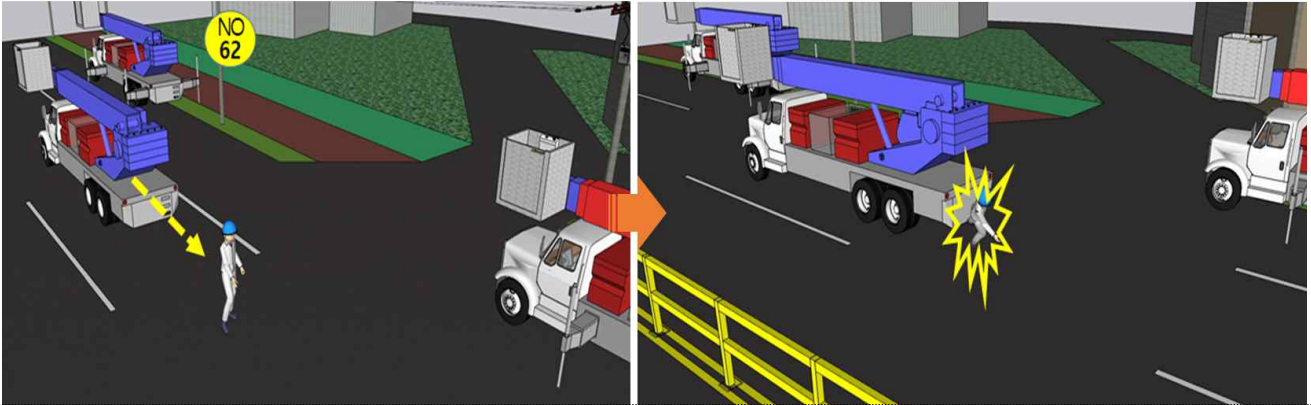




재해 개요

- 2022. 7. 12.(화) 8:30경, 전북 □□시 △△동 소재 「○○○○」 공사 현장에서, 전주의 개폐기 교체 작업을 위해 활선* 차단 조치를 한 뒤 절연 고소작업차 운전자가 절연 고소작업차를 후진하던 중 절연 고소작업차 뒤에서 걸어가고 있던 재해자와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

* 활선 : 전기가 충전되어 있는,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



재해 발생 원인

- 사전조사를 통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접촉방지조치 미실시**
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절연 고소작업차를 작업 시에는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운행경로, 작업 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나 미실시
 - 또한,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장비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미배치
- 고소작업대 이동시 장애물 사전 확인 미실시**
 -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동통로의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미확인 하였으며, 장애물이 있는 경우 운행경로를 다른 곳으로 바꾸거나 장애물에 대한 충돌방지조치 (작업자 통제 및 출입통제)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



재해 예방 대책

- 사전조사를 통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접촉방지조치 실시**
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절연 고소작업차를 작업 시에는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운행경로, 작업 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함
 - 또한,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장비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
- 고소작업대 이동시 장애물 사전 확인 실시**
 - 고소작업대를 후진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동통로의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, 장애물이 있는 경우 운행경로를 다른 곳으로 바꾸거나, 장애물에 대한 충돌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함
- 장비 안전성 확보(후방카메라 설치 등)**
 - 차량 후진시 보행자 등 주변 장애물과 후방의 사각지대 등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후방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장비의 고장유무를 확인하여야 함

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·직영·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